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회 계 과

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
(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제2관 증축)

구 미 시

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

의 안 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26. 10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현재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은 대통령 유품 및 대통령 관련 자료 7,866점 중 477점을 전시하고 수장고 480㎡에 7,389점을 보관 중으로, 금속·지류 등 보존 환경이 상이한 유품의 혼합 수장과 자료 과포화로 안전한 자료 관리를 위한 수장공간 확보가 필요함

○ 재질별 수장고를 포함한 역사자료관 제2관 증축으로 대통령 유품의 안전한 보존·관리 기반을 마련하고, 전시 콘텐츠를 확대하여 대통령 유품 및 대한민국 근현대사 자료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·활용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○ 위　　치 : 구미시 상모동 156-1번지 일원(현 역사자료관 일원)
○ 대　　상 : 건물 1개동 연면적 2,830㎡(지상 3층)
○ 기준가격 : 195억원
○ 사 업 비 : 195억원(도 93억원, 시 102억원)
○ 사업기간 : 2027. ~ 2030.
○ 주요시설 : 재질별 수장고, 보존복원실, 기획전시실 등
○ 추진현황

-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: '25. 12. ~ '26. 2.
- 문체부, 공립박물관 설립 사전협의 : '26. 2.
- 道,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: '26. 3. ~ 4.
- 道, 전환사업비 신청 : '26. 8.
- 道, 재정투자심사 통과 : '26. 9.

○ 향후추진계획

- 건축설계 및 유품연구 용역 : '27. 1. ~ 12.
- 건축공사 및 전시설계, 개관 : '28. ~ '30.

3. 근거법령

○「지방자치법」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

○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
○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제12조

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㎡, 백만원)

구 분			건수	수량	금액
취득	계	토지 건물 기타	1건	2,830	19,500
	1.매입	토지 건물 기타			
	2.교환으로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
	3.기타 취득	토지 건물 기타	1건	2,830	19,500

취득 재산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㎡, 백만원)

구분	재 산 의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 매각 시기	사 유	재산 소유자	비고
	재산 구분	소 재 지	수 량(㎡)					
총계			2,830	19,500				
취득	건물	상모동 156-1	2,830	19,500	2030년	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제2관 증축	구미시	

위 치 도


새마을운동
테마공원
제2관
예정지
박정희대통령
역사자료관
박정희대통령
생가


제2관
예정지
박정희
대통령
동상
박정희
대통령
역사자료관

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 비용추계서
(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제2관 증축)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 - 재질별 수장고를 포함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제2관 증축

2. 비용추계의 전제
 -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(서울특별시)
 - 기본설계 결과 바탕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출	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제2관 증축	424	9,076	10,000	-	-	19,5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 비	-	-	-	-	-	-
도 비	204	4,356	4,770	-	-	9,330
시 비	220	4,720	5,230	-	-	10,170
민 간	-	-	-	-	-	-
기 타	-	-	-	-	-	-
합 계	424	9,076	10,000	-	-	19,500

5. 부대의견
 - 본 추계결과는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연도별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

6. 작성자

-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학예팀 이준현(054-480-4942)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금 액	산출내역	비 고
총 계		19,500		
공사비	소 계	14,691		
	건축비	14,691	- 5,191,226원×2,830㎡ = 14,691,169,580원	
설계및감리비	소 계	2,487		
	설계비	812	- 설계비(공사비의 5.53%) = 812,421,678원	
	설계공모보상비	81	- 설계비×10.00% = 81,242,168원	
	감리비	1,594	- 공사비×공사감리비 요율(전면책임감리) 10.85% = 1,593,991,899원	
부대비	소 계	549		
	시설부대비	35	- 공사비×시설부대비 요율 0.24% = 35,258,807원	
	기타	514	- 전시설계 및 전시물설치 등 513,550,000원	
예비비	소계	1,773		
	예비비	1,773	- (공사비+설계 및 감리비+부대비) × 10.00% = 1,772,763,413원	

관계법령

□「지방자치법」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~ 5. 생략
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

7. ~ 11. 생략

② 생략

□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38조(중요재산, 공공시설의 취득·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) ① 법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"이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(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
② ~ ④ 생략

□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공유재산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

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

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□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

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
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

□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

제12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 가. 취득의 경우: 10억원
 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
2.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1천제곱미터
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2천제곱미터

소 관 부 서		회 계 과 (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)
입 안 자	과 장	임 웅 건 (김 종 우)
	팀 장	전 유 향 (현 은 주)
	담 당 자	박 재 경 (480-5072) (이 준 현) (480-4942)